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입법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와 제6조)

나.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 합리화(안 별표15)

- 1)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시 최대배출기준이 물환경보전법상 “가”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에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시설개선투자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나”지역 기준을 적용
토록 합리화함

3) 위 개선을 통해 환경의 질을 담보하되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효율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 방류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
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법령 준수상 혼란 방지(안 별표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호 및 별표3 제2호아목·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을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를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가목22) 내지 24), 다목4)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3 제1호가목 22)·23) 및 다목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2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별표 3의 제목 중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을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 및 영
별표 3 제2호아목·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2호나목”을 “제
2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을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
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
로, “그 기준”을 “그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2) 중 “해당하는 기준”을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
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	이라 한다) <u>별표 2 제2호 및 별표</u>			
터 다목까지에서 “환경부령으	<u>3 제2호아목·자목</u>			
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	② 영			
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란 각각 「폐기물관				
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				
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				
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				
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 <u>별표 2 제2호</u>	<u>별표 2</u>			
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②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제1호·제2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

2. 영 별표 2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별표 2 제4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4.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u>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u> 2. 영 <u>별표 3</u>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 영 별표 3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u><신 설></u> ④ ~ ⑥ (생 략)	----- ----- ----- ----- -----. 1. ----- <u>경우(가목22) 내지 24), 다목4)는 제외한다</u>) : ----- -- 2. -- <u>별표 3 제1호가목22)·23) 및 다목4)</u>, ----- ----- ----- -- 3. ----- <u>제2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u>----- ----- -- 4.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④ ~ ⑥ (현행과 같음)
---	---